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60
----------	------

제출년월일 : 2009. 5. / .
제 출 자 : 고성군수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공무원 직종·직급별 정원기준을 조정하고 6급이하 정원은 직급별 정원 총수를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무원 직종·직급별 정원책정 권한 자치단체 이양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조정(안 제3조)
-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정원운영의 신축성 확대를 위해 6급 이하 정원은 직급별 정원 총수를 규정(안 제4조)
- 다. 연구직(기록연구, 학예연구)을 신설 (안 별표3)

3. 참고사항

- 가. 입법예고
 - 생략
- 나. 관련법령 및 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
-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4. 본 문 : 덧붙임과 같음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조(종전의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정원채정기준) ①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1”을 별지(별표 3)와 같이 하고,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일반직	기능직·고용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80% 이상	17% 이내	3% 이내

비고 :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7% 이내	29% 이내	32% 이내	25% 이내	6% 이상

비고 : 읍·면의 정원을 포함한다.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 율	8.5% 이내	22% 이내	20% 이내	31% 이내	18.5% 이상

비고 : 읍·면의 정원을 포함한다.

3.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10% 이내	90% 이상

비고 : 읍·면의 정원을 포함한다.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	93% 이내	7% 이상	-	-

비고 :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개정안)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면
총 계	631	282	14	118	40	177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u>507</u>	<u>228</u>	8	74	32	<u>165</u>
4급	2	1		1		
4~5급	3	2		1		
5급	33	11	3	2	3	14
6급이하 계	<u>469</u>	<u>214</u>	5	70	29	<u>151</u>
기능직 계	<u>83</u>	50	6	7	8	<u>12</u>
별정직 계	14	1		13		
5급상당						
6급상당 이하 계	14	1		13		
연구직 계	<u>2</u>	<u>2</u>				
연구관						
연구사	<u>2</u>	<u>2</u>				
지도직 계	24			24		
지도관	2			2		
지도사	22			22		

[별표1]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현행)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면
총 계	631	282	14	118	40	177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508	230	8	74	32	164
4급	2	1		1		
4~5급	3	2		1		
5급	33	11	3	2	3	14
6급	141	68	2	12	9	50
7급	159	80	2	21	10	46
8급	119	46	1	31	9	32
9급	51	22		6	1	22
기능직 계	84	50	6	7	8	13
기능6급	3	2	1			
기능7급	8	8				
기능8급	16	13			3	
기능9급	25	15	3	3	1	3
기능10급	32	12	2	4	4	10
별정직 계	14	1		13		
6급상당	1	1				
6~7급상당	12			12		
7급상당	1			1		
연구직 계						
연구관						
연구사						
지도직 계	24			24		
지도관	2			2		
지도사	22			2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3조 (정원채정기준) ①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제3조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1」 과 같다.</p>	<p>제4조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신 설></p>	<p>제5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p>